

## 지역특산주 주원료 지정 범위 확대

### 배경 및 필요성

- 지역 영세한 수제맥주 업체의 안정적 유통 및 판로 요구됨
  - 수제맥주를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지역특산주 충족 요건 개선

### 제안 내용

- 「전통주산업법」 및 「주세법」상 지역특산주 주원료 요건 변경
  - 현행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관할 시·군·구 및 그 인접 시·군·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

구 분	요 건	
	현 행	개 선
지역특산주 주원료 정의	- 중량비에 따라 상위 3개이내의 원료	- 지역 홍보 및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한 질적평가 추가

- 현실적으로 주원료의 중량비 기준에 맞는 수제맥주 제조 제한이 큼
-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수제맥주의 지역 홍보 및 경제적 효과의 질적 평가 모색

### 파급효과

- 지역특산물 활용 수제맥주 개발 확대로 지역 농가 소득 확대
- 최소한의 매출처 확보를 위한 온라인 판매 → 경쟁력 강화에 기여

### 건의부서

- 농림축산식품부, 강원도 유통 원예과

## <세부 연구결과>

-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
  - 전통주 등의 품질향상과 산업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전통주 정의
  - 「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지정된 주류 부문의 국가무형문화재와 시·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「주세법」 제6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
  - 「식품산업진흥법」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「주세법」 제6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
  -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 단체와 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 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관한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로서 제8조에 따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의 제조면허 추천을 받아 「주세법」 제6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(이하 “지역특산주”라 한다)
- “전통주 등”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술을 말한다.
  - 전통주: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·발전시켜 진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술
- “주원료”란 제조하려는 술의 제품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원료(원료가 여러 종류인 경우에는 최종 제품의 중량비에 따라 상위 3개 이내의 원료)를 말한다. 다만, 양조용수와 첨가하는 주정은 제외 한다.